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 보수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,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에 준하는 사업비 및 절차를 적용하였으나,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수와 관리가 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 보수 경우

- 현행 : 문화재실측설계업체(설계), 문화재수리업체(시공)
- 변경 : 사업비 절감 및 효율적 보수·관리가 되도록 예외 적용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없음[미래전략담당관-3796(2021.11.17.)]
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해당없음[가족지원과-47227(2021.11.11.)]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1. 11. 24. ~ 12. 14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 보수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수를 기존 문화재 관련 업체가 설계·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문화재 관련 업체가 아닌 기타업체에서도 설계·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수와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